

【입소계약에 관한사항】

1. 계약목적

- 1) 이용계약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,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) 시설과 입소자,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

2. 계약대상자 -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(보호자)도 가능하다

3. 계약기간 - 입소자는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.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.

4. 등급외자

- 1)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을 확보한다.
- 2)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(비급여항목별 비용, 입소계약조건 등)을 협의(장기요양인정서 첨부) 한다.

5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시설 입소 비용

■ 입소 보증금 - 없 음

■ 입소 비용 (30일 기준)

구 분	급 여 비 용					비급여 부담금		본인부담금 총 액
	급여합계	1일수가	일수	공단부담	본인부담 (A)	고정 비급여(B)		
				80%	20%	식재료비	구성	A+B
1등급	2,713,500	90,450	30	2,170,800	542,700	345,000	1식 3,500원 간식1회 1,000원	887,700
2등급	2,517,300	83,910	30	2,013,840	503,460			848,460
3-5	2,377,200	79,240	30	1,901,760	475,440			820,440
감경대상 본인 부담금 12%				88%	12%			
1등급	2,713,500	90,450	30	2,387,880	325,620			670,620
2등급	2,517,300	83,910	30	2,215,220	302,080			647,080
3-5	2,377,200	79,240	30	2,091,940	285,260			630,260
의료급여 수급권자 감경 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8%				92%	8%			
1등급	2,713,500	90,450	30	2,496,420	217,080			562,080
2등급	2,517,300	83,910	30	2,315,920	201,380			546,380
3-5	2,377,200	79,240	30	2,187,020	190,180			535,180
기초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(생계, 의료수급자)					면제	생계비		없 음

■ 비급여 항목 비용

항 목	내 용	금 액	비 고
식 재료비	1식 3,500원 * 3식	1일 10,500원	
간식비	1회 1000원 * 1회	1일 1,000원	
상급침실 이용료	없음	없음	
진료,약제비	외래 진료 및 약제비 비급여액	실 비	
이 미용	외부,방문 이미용	실 비	
외식,요청간식	매식비, 간식 매입비	실 비	
요청 물품	보호자, 또는 요청에 의한 물품	실 비	

※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.

【계약자, 신원인수인의권리와 의무】

서비스제공자 “갑” 과 서비스이용자 “을” 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.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- ① “을” 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(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② “을” 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2. 입소자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
-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
-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
-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

3. 신원 인수인의 의무

-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
-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
-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

4. 신원 인수인의 권리

- ① 모든 어르신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반 인간적 존엄의 권리를 갖는다.
- ② 개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를 받는다.
- ③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.
- ④ 종교생활, 문화생활, 취미 및 여가생활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.
- ⑤ 모든 생활노인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.
- ⑥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, 치료에 대한 알권리를 갖는다.
- ⑦ 어르신은 직원들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.
- ⑧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⑨ 노인들은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갖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- ⑩ 모든 수급자를 차별하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.
- ⑪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.

【계약의 해제】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2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3.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4.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
5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6.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, 다만,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7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